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조선대학교(법인 일반업무회계·수익사업회계),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조선이공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의 2019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0년 2월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 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별첨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조선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학교법인조선대학교(일반업무회계·수익사업회계),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조선이공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의 2020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0. 4. 17.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감 사

박태성

(공인회계사등록번호 제 3580 호) 감 사

김재민

피감사 기관장

2020년 4월 17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박관석

피감사 기관장

2020년 4월 17일

조선대학교
총장 민영돈

피감사 기관장

2020년 4월 17일

조선대학교
병원장 정종훈

피감사 기관장

2020년 4월 17일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장 손이경

피감사 기관장

2020년 4월 17일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조순제

피감사 기관장

2020년 4월 17일

조선간호대학교
총장 김상권

감 사 보 고 서

교 육 부 장 관 귀하**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조선이공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의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조선이공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의 재산상·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 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운영및 업무감사지적사항(건)	비 고
	건수	금 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3. 학교 관련				
4. 부속병원 관련				

붙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1부.

2020. 4. 17.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감 사

(공인회계사등록번호 제 3580 호) 감 사

피감사 기관장

2020년 4월 17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피감사 기관장

2020년 4월 17일

조선대학교

총장 민영돈

피감사 기관장

2020년 4월 17일

조선대학교

병원장 정경호

피감사 기관장

2020년 4월 17일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장 손미경

피감사 기관장

2020년 4월 17일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조순제

피감사 기관장

2020년 4월 17일

조선간호대학교

총장 김상진